

대통령령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

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) ① · ② (생략)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·제조[제제(製劑) 및 소분(小分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·4. (생략) ④ (생략) 제25조(보상금의 지급) ① (생 략)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 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	제3조(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 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</u> 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보상금의 지급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그 보상금은 벌금액과 추정금액 및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.	----- . <u><단 서 삭제></u>
--	--